

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 종합대책

농림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초부터 검토해온 「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 종합대책」을 지난 7월 29일 확정·발표했다. 종합대책 중 사료관련 부문만을 발췌, 정리한다. -편집자주-

1.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강화

1.1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 및 규제강화

□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○ 교육대상 : 축산농가, 농협·지역축협 등 축산농가 지도관, 지자체 수의·축산관련 공무원, 사료 및 동물약품 제조회사 관계자 등

○ 교육 방법 : 전국순회교육(연2회 이상, 4개 권역)

○ 교육내용 : 동물약품별 안전사용기준, 후기사료 급여 당위성, 10대 안전사용수칙, 내성균 출현 문제, 잔류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

- 교육·홍보예산 확보 : ('05예산) 100백만원
→ ('06예산) 150백만원

* 추진 일정(04~) : 매년 2,400명, 연2회, 권역별(4개)

□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규제 등 강화

①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연장

○ (현행) 3개월 → (연장) 6개월

②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인상조정 및 부과철저

○ (현행) 100만원 → (인상) 300만원(약사법 제79조 개정)

○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(시·군·구청장)

- '03 과태료부과(100만원) : 모니터링검사(137건), 규제검사(99건)

※ 과태료 상향조정 문제는 축산관련단체 등과 구체적 협의, 그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등 요청(보건복지부)

③ 잔류 위반농가의 명단 공개

○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

④ 규제검사 대상 농가 집중 관리

○ 기본개념 : 익명출하 및 타 도축장 또는 타농가 판매방지대책 강구

○ 관리방안 : 규제검사 대상 농가를 전산화

○ 세부추진방안 : 규제검사기간 동안 전산화 등으로 체계적 관리

-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잔류위반농가의 사육규모, 출하예정일별 두수 등 정보를 검역원에 제공

- 검역원은 전산입력 후 전 도축장(검사관)

에 통보

- 당해 농가에서 도축 출하시 검사관이 두수 확인
- 확인된 출하두수는 다시 검역원에 통보하여 전산관리

⑤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한 1농가 1공무원 담당관 제도 운영

- 규제검사대상농가의 특별관리기간(6개월)동안 출하상황 감독
- 잔류원인규명, 후기사료급여, 휴약기간 준수 등 관리방법 개선

⑥ 익명 출하, 타 농가에 대한 무단 판매행위 등에 대해 제재 근거 마련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(과태료 처분) 검토)

⑦ 국가잔류물질검사(NRP)프로그램 전산화(net work) : 장기과제 추진

⑧ 항생제 내성균 조사 실시(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)

□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한 우대조치

- 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시 잔류위반비용(3년간 무검출시 만점 처리)을 반영

* 추진일정 : 개선방안수립(04.9), 위반농가 전산화 추진(04.10), 검사요령개정(안)마련(04.10), 입안 예고 및 확정고시(04.11-12), 시행(05.1), NRP검토(05)

- 익명출하, 타농가 판매행위 제재근거 : 법 개정 · 초안 검토(04.하), 법령개정(안)확정(05.상), 시행규칙 개정(05.하)

1.2 사료공장 HACCP 도입 및 위해물질 관리 강화

□ 사료공장에서 적용할 HACCP 도입 및 시행

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(HACCP) 지침 마련

○지침주요내용

- 사료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일반위생관리 기준(SSOP)

- 위해요소 및 중요 관리점(CCP) 설정

- 사료원료 관리, 저장시설, 이송 및 집진시설, 분쇄시설, 열처리가공시설, 배합기, 포장시설, 운송차량 등 위해요소 제거 기술

- 사료원료 · 제조 · 유통단계 HACCP 검증 지침 및 감독 지침

- 사료원료 · 제조 · 유통계의 위해요소관리 적용 모델 개발

- HACCP 지정신청, 인증방법, 감독 등 사후 관리 방안

* CCP : 사료내 항생제, 아플라톡신, 농약, 중금속, 살모넬라균 등

○지침 제정 방법 : 전문가로 작업반(T/F)를 구성하여 제정

- 축산연구소, 검역원, 관련협회 등 전문가팀(T/F) 운영중

② HACCP 지침(매뉴얼) 및 홍보물 제작 배포

○HACCP적용 지침을 발간하여 사료업체, 지자체 등에 배포

○홍보용 리후렛, 팜플렛, 포스타 등을 제작 · 배포

③ HACCP 시행 준비를 위한 교육 실시

○교육대상 : HACCP 적용을 준비 중인 사료업체, 농협 · 지역축협 등 축산농가지도관, 지자체 수의 · 축산관련 공무원

○교육방법 : 도축장 HACCP 교육기관(한식연 등 4개 기관), 축산연구소를 지정하고, 농업

연수부에 교육과정에 반영

- 교육내용 : HACCP 계획수립 · 사료원료 관리 및 제조 · 유통 보관과정에서 위해요소 제거관리 기술 교육

④ HACCP 시행 및 인증서 발급

- 업체 자율 시행 원칙, 인증 요청시 별도기관에서 발급
- 농가, 브랜드 업체에 HACCP 적용업체 생산 사료 사용 홍보 실시

⑤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우대 조치

- 연간 사료검사 면제, 시행 업체 공표, 농가홍보, 브랜드 평가 및 인증기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
- '05년부터 사료원료구매자금은 HACCP 적용업체 우선 지원

*추진일정 : 지침(안)확정(04.10), 입안예고(04.11), 확정고시(04.12)

- 교육·홍보 : 지침, 포스터 등 제작배포(05.상), 순회 교육 (05.하)

- 시행 : 자율시행(05.1), 의무시행검토(07.), 의무시행(08.10이후)

□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

① 사료내 중금속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

- (현재) 비소, 불소, 납, 크롬 등 8개 품목만 관리
- (확대) 다이옥신, 곰팡이독소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

② 사료내 관리대상 잔류농약 확대

- (현재) 배합사료에 디디티(DDT)등 17종의 농약만 관리

- (확대) 단미사료 · 조사료도 포함,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(일본 40종)

③ 사료내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
- (현재)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종류(53종)
 - 동물약품판매량 : OTC(18.6%), CTC(26.6%), 페니실린(3.6%), 설파메타진(1.6%)
 - (감축) EU · 일본 등 선진국 운용실태파악, 30종 이내로 감축
 - 감축대상 : 국내 · 외 미사용 물질, 내성이 강한 물질, 국내 대체가능물질 등
 - 사료내 혼입가능한 동물용의약품 : EU 4종(항생제), 일본 23종

* 추진 일정 : 확대 · 감축 대상 물질선정(04.9), 유해사료 범위 및 기준(안)마련(04.10), 입안예고(04.11), 확정고시(04.12)

1.3 사육단계의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 (HACCP)제도 도입

□ 사육단계의 축종별 HACCP 도입 계획 수립

- 사육단계의 HACCP 도입 필요성, 기본개념 등
 - 국제 규정, 외국의 도입 사례, HACCP 적용 대상 축종

○축종별로 국내 위해 요소 실태 조사 실시(연구용역)

○위해요소 및 중요관리점 등 사육단계 HACCP 지침개발(T/F구성)

○HACCP 적용농장의 인증방법 및 인증기관, 사후관리방법 등

· 사육단계 HACCP : 축사시설, 밀사정도, 가

축입식요령, 안전사료 확보, 사육환경을 기본으로 하고, 특정미생물 등 생물학적요인, 동물약품·농약·중금속·환경물질 등 화학적요인, 주사바늘 등 물리적 요인, 병변·외상 등 병리학적 요인 등의 관리내용 기록 및 검증을 통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제도임

* 추진 일정 : 기초 자료조사(04.9), 기본계획(안)마련(04.12),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(05.6), 기본계획 확정(05.12)

□ 국내 위해 요소 실태 조사(돼지)

- 기본개념 : 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실태조사로 중요관리점 설정
- 조사방법 : 연구용역사업(정책과제 또는 촉발기금)으로 추진
- 조사내용 :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요인, 항생제 등 화학적요인, 주사바늘 등 물리적요인, 가축질병병변 등 요인 및 원인분석
- 조사결과활용 : 사육단계의 HACCP 운용 지침에 반영

* 추진 일정 : 연구용역 확정 (05.1~2 : 정책과제 또는 촉발기금), 용역계약체결 (05.3), 연구용역 수행 (05.4~06.12)

□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하위법령 개정
 - 사육단계의 HACCP 운용 근거조항 신설 (법9조) 및 지침내용(부령)

* 추진 일정 : 개정(안)초안검토(04.하), 개정(안)확정(05.상), 법령 상정 및 확정(05.하,국회), 시행규칙 개정(05.하)

□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시행

- 제정 원칙 : Codex 7원칙 12절차에 의거 제정
- 대상 축종 : 돼지, 젓소, 한우(비육우), 산란계, 육계 등 5개 축종
- 주요내용 : SSOP관리방안, HACCP개념, 위해요소결정, 중요관리점 결정 및 제거방법, 검증방법, 기록 및 문서화방법, 개선조치 방법 등
- 지침 제정 방법 : 전문가 T/F를 구성하여 제정
 - 일본, 미국, 호주 등의 HACCP 추진 내용의 벤치 마킹
 - 축종별 국내 사육단계의 위해요소 확인 및 제거 방법 조사
- 시행 : 축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
 - 돼지(06) → 젓소(07) → 한우(08) → 산란계(09) → 육계(10)

* 추진 일정 : T/F구성(05.1), 지침초안마련 및 공청회(05.상), 지침제정 및 시범도입(06.1,돼지)

□ 사육단계의 HACCP 시범도입 및 교육·홍보

- 돼지 HACCP 운용 시범 사업(돼지)
 - 시범사업대상 : 축산물브랜드사업, 친환경 축산직불제 농가
- 돼지 HACCP 도입에 따른 지침·지정방법 및 사후관리방법
 - HACCP적용 돼지 농가, 시도, 농협(지역축협)등 관계관 교육
- 돼지 HACCP 운용 농가에 대한 우대조치
 - 친환경 직불제사업 등과 연계지원

* 추진일정 : 시범도입 홍보(06.1),단계별(축종별)시범도입홍보(07~10), 지침책자발간(06~), 홍보·교육 실시(06~) ㉟